식품 종사자는 식인성 질병 증상, 진단 또는 노출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 서면 일지는 대부분의 식품시설에 권장되는 도구지만 즉석섭취 식품의 맨손 접촉에 대한 승인된 계획이 있는 식품시설의 경우에는 필수입니다[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(WAC, 워싱턴 행정법) 246-215-03300(5)(c)(i)]. 필요한 경우 최소 90일간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.

툴킷: 식품 취급 직원 질병 일지

* **직원은 식인성 질병 증상, 질병 또는 노출에 대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**
* **증상**: 설사, 구토, 발열을 동반한 인후통, 황달 또는 염증성 병변
* **진단된 질병**: 살모넬라, 시겔라, 이질균 독소 생산 대장균, A형 간염 바이러스, 노로바이러스
* **노출**: 고민감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인성 질병이나 발병에 노출된 종사자
* **진단된 질병이나 황달이 있는 직원은 보건부의 승인을 받고 나서야 일할 수 있습니다.**

고민감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도 식인성 질병에 노출된 후 복귀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* **설사나 구토가 있는 직원은 증상이 멈춘 후 최소 24시간이 경과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.**
* 발열이 동반되는 인후염 또는 염증 병변이 드러나 있는 종사자는 깨끗한 접시나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취급할 수
없습니다.
* 고민감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발열이 동반되는 인후염이 있으면 일할 수 없으며, 발병 또는 식인성 질병 진단을 받은 자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접시나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취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* **직원에게 다음이 있는 경우 담당자는 보건부에 통지해야 합니다.**

*살모넬라균* ● *시겔라* ● 이질균 독소 생산 *대장균* ● A형 간염 바이러스 ● 노로바이러스 ● 황달

* **고객이 잠재적 질병을 보고하는 경우 담당자는 보건부에 통지해야 합니다.**

**보건부 연락처 정보: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보고** **날짜** | **직원 성명**또는 개인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고유 식별자 | **담당자에게 보고된 증상** | **보건부에 보고** | **의견란** |
| 구토\* | 설사\* | 발열 | 기타 | **날짜 및 시간** | 황달, 진단, 고객의 질병에 대해 보건부에 통지\*\* 또는 노출 후 복귀\*\*\* |
| 근무지 이탈 | 복귀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
|  |
| --- |
|  \* 활동성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는 종사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최소 24시간 동안 직장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. |
|  \*\* 직원이 황달, 식인성 질병 진단을 받았거나 고객이 질병을 보고한 경우 보건부에 알립니다. |
| \*\*\* 고민감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(노인 센터 및 요양원 등)에서 근무하는 식인성 질병에 노출된 식품 종사자는 미포장 식품이나 깨끗한 주방기구를 다루기 전에 보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|

식품 종사자는 식인성 질병 증상, 진단 또는 노출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 서면 일지는 대부분의 식품시설에 권장되는 도구지만 즉석섭취 식품의 맨손 접촉에 대한 승인된 계획이 있는 식품시설의 경우에는 필수입니다[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(WAC, 워싱턴 행정법) 246-215-03300(5)(c)(i)]. 필요한 경우 최소 90일간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.

**툴킷: 직원 질병 일지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보고** **날짜** | **직원 성명**또는 개인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고유 식별자 | **담당자에게 보고된 증상** | **보건부에 보고** | **의견란** |
| 구토\* | 설사\* | 발열 | 기타 | **날짜 및 시간** | 황달, 진단, 고객의 질병에 대해 보건부에 통지\*\* 또는 노출 후 복귀\*\*\* |
| 근무지 이탈 | 복귀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|  |  | 🞏 | 🞏 | 🞏 | 🞏 |  |  | 🞏 |  |

|  |
| --- |
|  \* 활동성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는 종사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최소 24시간 동안 직장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. |
|  \*\* 직원이 황달, 식인성 질병 진단을 받았거나 고객이 질병을 보고한 경우 보건부에 알립니다. |
| \*\*\* 고민감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(노인 센터 및 요양원 등)에서 근무하는 식인성 질병에 노출된 식품 종사자는 미포장 식품이나 깨끗한 주방기구를 다루기 전에 보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|

본 문서를 다른 형식으로 요청하려면, 1-800-525-0127번으로 전화하십시오. 난청 또는 청각장애인 고객은 711(Washington Relay)로 전화
또는 이메일 civil.rights@doh.wa.gov로 요청하십시오.